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 3개 대학 생활권의 지역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 정치외교학과 김은준

<< 목차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Ⅱ. 청년 범죄피해 회복의 정책적 특성과 분석틀
1. 범죄피해 이후 ‘회복’과 청년의 생활 지속성
2. 회복 전달체계의 분석기준
Ⅲ.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지원환경과 지역자원
1. 동대문구 청년·안전정책과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2. 3개 대학 및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자원
Ⅳ.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구조와 공백
1. 피해발생에서 회복까지의 지원경로 분석
2. 접근·연계·회복·데이터 단계의 병목요인
Ⅴ. 국내 지원모델과 정책대안의 비교
1.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및 대학 접근형사례
2. 정책대안의 비교와 지방정부 개입영역
Ⅵ. 「DDM 청년 회복브리지」 정책모델
1. 단계별 청년 범죄피해 회복연계 모델
2. 추진체계·예산·성과관리 및 확장방안
Ⅶ.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요약문】

범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에 도달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범죄피해 이후에는 신고와 수사뿐 아니라 심리·의료·법률·주거·생계 등 여러 영역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피해가 학업과 취업, 독립생활과 주거 등 생애전환기의 일상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 청년층과 정책적 관련성이 높은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범죄피해 이후의 회복 역시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대문구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서울시·중앙정부 전문기관과 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권 관련 기구 등 다양한 지원자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지원제도의 부재를 전제하기보다, **기존 자원이 청년 피해자의 관점에서 하나의 연속적인 회복경로로 기능**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접근가능성, 전달연속성, 정책추가성, 제도적 실행가능성을 설정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법령·조례와 동대문구의 2026년도 예산·성과계획 및 청년정책 자료에 대한 문헌·정책·예산분석,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3개 대학 등 지역자원의 기능 분석, 지원경로 맵핑과 국내 통합지원사례 비교를 병행한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동대문구의 연령별·범죄유형별 피해 규모와 청년의 실제 지원실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보다 공개자료로 확인 가능한 전달체계의 구조와 지방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가칭 「DDM 청년 회복 브리지」를 제안한다. 새로운 대규모 기관이나 현금지원사업을 우선 신설하기보다 3개 대학과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자원을 하나의 회복경로로 구조화하고, 표준 연계절차와 사례관리를 시범운영한 뒤 실제 미충족 수요가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보충지원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모델이다. 청년 범죄피해 정책의 과제는 지원제도의 수를 늘리는 데만 있지 않다. 기존 제도 사이의 단절을 줄이고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에 도달한 뒤 학업·노동·주거와 지역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지속가능한 도시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조건이다.

주제어 : 청년정책,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정책전달체계, 동대문구, 대학생활권, 지역자원 연계, 정책추가성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에 실제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 의미가 아니다. 범죄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신변보호, 심리·의료·법률, 주거·생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사건 이전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

도 발생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역시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정책의 실효성은 개별 지원제도 존재 여부뿐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피해자 회복과정에서 얼마나 적시에 연결되는가**라는 전달체계 관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1)]

최근 정부의 정책도 개별 서비스 확대에서 기관 간 통합·연계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2024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체계에서 연계하도록 하였다. 이는 범죄피해자 정책의 과제가 단순히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가'를 넘어 **분산된 자원을 피해자의 회복경로에 맞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 동대문구 역시 범죄피해자 지원자원이 부재한 지역은 아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100만 원과 법정운영비보조 4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지역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도 운영되고 있다.[3)] 또한 가족정책 영역에서는 늦은 시간 여성과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귀가를 지원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에 2026년 4,705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다.[4)] 특히 동대문구에는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대규모 대학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 대학 모두 학내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등에 대응하는 인권 관련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담·신고와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뿐 아니라 심리적·법적·의료적 지원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인권센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괴롭힘·차별 등 인권침해 상담과 사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5)] 대학은 청년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전문기관 이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초 접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까운 지원기관의 존재가 곧 높은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학교의 상담체계 사례에서는 다수의 학내 상담기관이 존재함에도 통합적인 안내체계가 부족할 경우 중복 신청과 대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6)] 또한 청년정책고용과의 2026년 성과계획은 '고용촉진 활성화로 구민 생활 안정 도모'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취업지원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두고 있다.[7)] 이는 동대문구에 청년 안전이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이 존재하

1) 장다혜, & 추지현. (2025).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25-A-0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법무부. (2024년 7월 19일). 「모든 지원을 이곳에서 한 번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a).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동대문구)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b).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동대문구)

5) 경희대학교 인권센터. (2026). 『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2026. 1. 6.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n.d.). 「인권센터 주요 업무」

6) 조유진. (2024년 11월 17일). 「서울대 학생들의 SOS, 심리상담실 앞 기다림 줄이려면」.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c). 『2026년도 성과계획서』

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년정책 · 범죄예방정책 · 범죄피해자 회복지원이 서로 다른 정책영역과 전달체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내용들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자원의 양과 이용자가 체감하는 접근성은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는 전달체계상 문제**를 보여주는 참고사례이다.

청년을 별도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정책적 근거가 존재한다. 모든 범죄의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새로운 범죄유형에서는 청년층의 정책적 관련성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만 637명 가운데 20대가 49.1%였으며, 10대와 20대를 합한 비율은 77.6%에 달했다. 특히 합성 · 편집 피해에서는 10 · 20대 비중이 91.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피해자의 연령구조를 설명하는 통계는 아니지만, 디지털 플랫폼 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피해유형에서는 청년층을 고려한 접근 · 연계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8] 더욱이 청년기는 교육, 취업, 노동시장 진입, 주거독립 등 여러 생활영역의 전환이 중첩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가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학업 · 근로 · 주거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대문구 문제를 '청년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없다'고 선험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대학 · 지역 · 광역 · 중앙정부의 지원자원이 **청년 피해자 관점에서 연속적 회복경로로** 기능하는가, 기존 제도를 중복하지 않으면서 보완해야 할 연결지점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2.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새로운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사전에 전제하기보다 현행 전달체계를 분석한 뒤 확인된 병목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연구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 민간 · 대학 지원자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를 위해 동대문구청 청년 · 안전 · 복지 관련 정책과 예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과 서울시 · 중앙정부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경희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 · 상담 관련 기구를 확인한다. 둘째, **이들 자원은 피해 발생 이후 일상 회복까지 연속적인 전달체계로 기능하며, 어떠한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특히 2026년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에 대해 중앙과 지역 지원센터 사이의 공식 연계창구, 상담 · 삭제 · 수사 · 법률 · 의료 등 후속지원의 연속성, 지원실적의 관리가 별도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범죄피해 지원에서 기관 간 '연계' 자체가 독립적인 정책기능임을 보여준다.[9] 셋째, **기존 국가 · 서울시 정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동대문구가 수행할**

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9) 성평등가족부. (2026). 『2026년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일례로 서울은 이미 14개 관계기관 기능을 결합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별도 대규모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정책추가성이 낮을 수 있다.[10] 따라서 기존 기관의 안내·연계절차 표준화, 대학과 지역 전문기관의 협력, 사례관리, 정책정보 환류 등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분석 결과 실제 경제적 지원의 공백이 확인될 경우에만 보충지원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제도 분석, 정책·예산 분석, 지원경로 맵핑(service pathway mapping), 사례비교를 병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청년기본법」 및 관련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범위를 검토하고, 「2026년도 동대문구 세입·세출예산서」·「성과계획서」·「성인지예산서」 등을 활용하여 현재 투입되는 행정·재정자원을 분석한다. 또한 3개 대학 인권센터, 경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서울시·중앙정부 전문기관의 기능을 피해자의 이동경로에 따라 재구성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 기존 사례와 비교한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동대문구 × 청년 연령대 × 범죄유형**의 피해 규모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한 동대문구 청년의 구체적인 지원실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청년의 범죄피해 발생률이나 미지원 인원을 추정하지 않고, 공개자료로 확인 가능한 **지원자원의 구조와 전달체계, 지방정부 개입의 조건**을 분석범위로 한정한다.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기관 간 연계성과는 후속 설문·인터뷰 및 세부 행정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II. 청년 범죄피해 회복의 정책적 특성과 분석틀

1. 범죄피해 이후 '회복'과 청년의 생활 지속성

범죄피해자 지원에서 범죄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의 회복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신고와 수사, 기소와 재판 등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중심이 되지만, 피해자가 경험하는 피해의 영향은 형사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다. 범죄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신체적 치료와 심리적 회복, 경제적 안정, 안전한 주거 확보, 법률적 조력 등이 동시에 요구될 수 있으며, 피해 이전에 유지하던 학업·근로·사회관계를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다. 장다혜·추지현은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특정 범죄별 법률과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와 분절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하고, 범죄의 종류보다는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재통합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 해당 연구는 최종 정책방향으로 피해자 권리에 기초한 통합지원과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11]

따라서 본 연구 역시 '회복'을 피해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으로

10) 법무부. (2024).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소개 및 제공 서비스 안내』.

11) 장다혜, & 추지현. (2025).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25-A-0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에 접근하고, 범죄피해로 중단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는 일상생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다시 확보해 가는 과정**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심리·의료·법률 등 직접 지원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주거·경제·학업·근로 관련 서비스로의 연계도 회복 전달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실제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에서 전문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치유회복 프로그램, 복합사례 관리와 지역기관 협력을 하나의 지원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중앙 지원센터 간 연계와 사후지원, 지원실적 관리까지 별도의 기능으로 제시한다.[12)]

또한, 청년에게 이러한 회복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청년에게만 고유한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는 생애단계의 조건에 있다. 청년기는 학업, 취업, 소득형성, 주거독립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이며, 범죄피해가 이들 영역 중 하나를 흔들 경우 다른 생활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 역시 청년정책을 일자리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거, 교육, 복지와 삶의 질,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청년 범죄피해 회복정책은 개별 지원금이나 상담사업보다 **도움 요청-전문지원 연계-서비스 이용-일상복귀**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연구에서도 통합적 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13)]

2. 회복 전달체계의 분석기준

본 연구는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동대문구라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과 기존 정책의 중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접근가능성, 전달연속성, 정책추가성, 제도적 실행가능성**의 네 기준을 설정한다.

<표 2-1>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 분석기준

분석기준	정의	핵심 질문
접근가능성	피해자가 지원의 존재를 알고 최초 지원체계에 실제 진입할 수 있는 정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가? 생활권 내 접근 가능한 접점이 존재하는가?
전달연속성	최초 접수 이후 필요한 전문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서비스가 이어지는 정도	기관 간 연계절차가 존재하는가? 피해자가 직접 다음 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가?
정책추가성	지방정부 개입이 기존 제도에 없는 추가적 편익을 창출하는 정도	국가·서울시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동대문구가 추가로 해결하는 병목은 무엇인가?
제도적 실행가능성	현행 법·조직·예산·정보보호 체계 안에서 실제 운영 가능한 정도	기존 조직·예산 활용이 가능한가? 개인정보 보호와 성과관리가 가능한가?

네 기준 가운데 접근가능성과 전달연속성은 **피해자의 이용경로[14)]**, 정책추가성과

12) 성평등가족부. (2026).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행가능성은 **지방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평가**[15]하기 위한 것이다. Ⅲ·Ⅳ장에서는 전자의 두 기준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를 분석하고, 이후 정책대안 비교와 정책모델 설계에서는 후자의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Ⅲ.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지원환경과 지역자원

1. 동대문구 청년·안전정책과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본 연구가 주목하는 특징은 동대문구에 관련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 범죄예방정책,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이 서로 다른 행정부서와 정책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도 동대문구 본예산에서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에는 15억 1,994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고용과의 성과계획에서 전략목표는 '고용촉진 활성화로 구민 생활 안정 도모'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공일자리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수,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실적 등이 주요 성과지표로 제시된다.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은 존재하지만 성과관리 구조는 취·창업 및 고용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정책의 경우 범죄 발생 이전의 예방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별도로 운영된다. 가족정책과의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여성과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심야 귀가를 지원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2026년 자체재원 4,705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생활권에서의 범죄위험을 낮추는 사전예방 정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피해가 실제 발생한 이후의 치료·법률·경제·사회적 회복과는 정책목적과 전달체계가 다르다.

범죄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전문적 보호·지원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핵심적인 지역자원으로 기능한다. 동대문구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센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100만 원과 법정운영비보조 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즉 동대문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별도 신규 정책영역으로 처음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전문기관에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이다.[16]

이러한 구조는 '지원이 없다'는 설명보다 **정책기능이 여러 영역에 나뉘어 존재한다는 설명**에 가깝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경제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고, 안전정책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서울시 전문기관은 피해 발생 이후의 전문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각 정책은 독립적으로 타당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 다만 청년이 실제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이 세 영역이 하나의 생활 안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개별 사업 존재 여부보다 **각각의 정책영역이 청년 피해자 회복경로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된다.**

또한 동대문구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한다는 사실만으로 동대문구

14) 장다혜·추지현(2025)의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지역정책 분석목적에 맞게 네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15) 성평등가족부. (2026).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a).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청년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현재 공개자료만으로는 동대문구민 가운데 몇 명이 센터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청년이 얼마나 포함되고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재정투입 규모와 실제 청년 수혜 및 회복성과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은 후속적인 정책평가의 과제로 남는다. 이 점에서 동대문구의 과제는 처음부터 별도의 청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전문적인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서울시 통합지원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년정책의 생활권 접점과 기존 전문지원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현재의 지방재정 투입이 어떠한 회복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3개 대학 및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자원

동대문구에는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국어대라는 대학이 밀집해 있다. 세 대학에는 각각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권침해나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과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경희대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 접수, 사건 조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수행한다. 운영규정 상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사건 결정 이전에도 침해행위의 중지, 공간 분리, 접촉금지 등 피해자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립대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뿐 아니라 심리적·법적·의료적 지원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외대도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성희롱·성폭력·괴롭힘·차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사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인권센터의 존재는 동대문구 청년정책에서 의미있는 자원이다. 대학생에게는 구청이나 검찰청 소재 전문기관보다 학내 기관이 생활동선상 가까운 경우가 많으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식 형사신고 이전 상담을 요청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 센터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체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문적인 지역지원체계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권 내 접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대문구 특징을 지원기관 절대적 부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학부터 지역·광역·중앙 수준까지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이미 존재한다. 핵심은 **어느 기관을 최초 접점으로 선택하더라도 필요한 다음 지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히 명확한가**이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대학과 경찰·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울시 전문기관 사이의 실제 연계 빈도와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대학 내부의 상담·조사·보호절차는 공개되어 있으나 모든 피해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차원의 표준 외부연계 절차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실제 연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개된 제도만으로 피해자가 예상 가능한 지원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Ⅳ.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구조와 병목요인

1. 피해발생에서 회복까지의 지원경로 분석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달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서나 기관별 조직도를 나열하기보다 피해 발생 이후 실제 이용자가 거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 범죄피해자의 지원경로를 **① 피해발생 및 인식, ② 최초 도움요청, ③ 지원수요 확인, ④ 전문기관 연계, ⑤ 복합서비스 이용, ⑥ 사후관리 및 일상복귀**의 여섯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피해로 인식하고 도움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은 행정적으로 신청가능한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처럼 피해가 반복되거나 사적 관계·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형에서는 피해자가 경찰 신고보다 상담이나 주변 기관을 먼저 찾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생활권 내 기관은 전문적인 범죄피해 지원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최초 도움요청을 받아 적절한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진입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최초 접점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청년 피해자는 대학 인권센터뿐 아니라 경찰, 여성긴급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유형별 지원기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최초 접점이 어디가에 따라 피해자가 얻게 되는 정보와 이후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전달체계에서는 최초 기관이 무엇이든 피해자 필요를 확인한 뒤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피해자의 지원수요를 확인하고 전문서비스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범죄피해는 단일보다 복수 필요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최초 상담기관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처럼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유형과 필요서비스를 파악하고 각 기관의 기능을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 지원체계에서도 초기상담, 피해상황별 지원전략 수립,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연계, 사후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전달경로가 명시되어 있다.[17]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컨대 한 피해가 동시에 수사, 심리상담, 의료치료, 주거이전과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피해자가 기관별 신청조건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동일 피해를 반복 설명해야 한다면 기관 분절이 이용자 행정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사후관리와 일상복귀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의 목적이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데만 있다면 개별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책도 종료될 수 있다. 그러나 회복을 학업·근로·주거 등 생활 지속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연결되었는지와 지원 이후 추가적인 미충족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정책과 범죄피해자정책의 접점은 이 단계에서 가장 분명해진다. 범죄피해자 전문기관이 피해의 직접적인 회복을 담당한다

1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면, 지방정부와 대학은 청년이 기존 생활영역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자원을 연결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검토할 수 있다.

2. 접근 · 연계 · 회복 · 데이터 단계의 병목요인

앞선 지원경로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체계에서 검토해야 할 병목을 **접근, 연계, 회복, 데이터**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병목'은 실제 모든 사례에서 지원이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개자료를 토대로 확인되는 제도적 구조에서 지원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지점을 의미한다.

첫째, **접근 단계의 병목**은 지원기관의 부족보다 정보의 분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학 인권센터, 경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솔루션 센터, 범죄유형별 전문기관 등 다양한 진입경로가 존재한다. 이는 선택지가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느 기관의 지원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탐색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서울대학교 상담체계 사례에서 다수 기관의 존재에도 단일한 안내창구가 부족할 경우 중복 신청과 대기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된 것도 유사한 전달체계 문제를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공개자료만으로 동대문구 청년이 실제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이를 향후 이용자 조사에서 검증해야 할 가설로 설정한다. 둘째, **연계 단계의 병목**은 각 기관의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역할 사이를 이어주는 절차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관한 문제이다. 대학 인권센터는 학내 신고와 상담 · 조사,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동대문구 차원의 외부 연계기준이나 표준 의뢰절차를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중앙 · 지역 디지털성범죄 지원체계에서는 관계기관용 접수창구와 연계업무, 지원실적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과 지역 전문기관의 연계 역시 비공식적 연락망에만 의존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개된 표준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실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회복 단계의 병목은 범죄피해자 지원정책과 청년정책 사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동대문구의 청년정책은 취업 · 일자리 · 자립 등 청년의 생활기반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체계는 피해 이후의 상담과 경제적 · 법률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두 정책은 각자 다른 목적과 소관체계를 가지지만 범죄피해를 경험한 청년에게는 동시에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피해로 근로를 중단했거나 주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범죄피해 전문기관의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청년정책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청년정책고용과가 직접 범죄피해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보다, 전문기관의 피해지원이 종료된 이후 필요한 청년정책 자원을 연계하는 보완적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데이터 단계의 병목은 정책 평가와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대문구는 2026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500만 원을 지원하지만 공개자료에서는 동대문구 주민의 실제 지원인원, 연령구성, 지

원유형, 지원 이후의 성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18] 이는 센터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공개된 자치구와 센터의 정책자료만으로는 재정투입-서비스 이용-회복성과의 연결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청년 범죄피해에 특화된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전체 지원실적 가운데 **청년의 이용규모와 피해유형, 어떤 지원이 부족했는지에 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현재 단계에서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자에게 새로운 현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반대로 아무런 정책개입도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근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 **확인되는 것은 청년정책, 대학의 생활권 지원기구, 지역 범죄피해 전문기관과 서울시 통합지원체계가 각각 존재하지만, 이를 하나의 청년 회복경로라는 관점에서 연결·평가하는 틀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후 정책대안의 핵심 질문은 '지원금을 얼마 더 지급할 것인가' 보다 **① 최초 접점에서 적정기관까지의 경로를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가, ② 기관 간 연결을 어떤 수준까지 표준화할 것인가, ③ 피해지원 이후 청년의 생활복귀를 어떤 기존 정책과 연결할 것인가, ④ 이러한 과정의 성과를 어떠한 데이터로 관리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Ⅴ장에서는 이러한 병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 통합지원 사례와 정책대안을 비교하고 동대문구가 추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능을 선별한다.

Ⅴ. 국내 지원모델과 정책대안의 비교

1.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과 대학 접근형 사례

앞선 분석에서 확인한 동대문구의 정책과제는 범죄피해자 지원기능을 처음부터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원자원을 청년 피해자의 회복경로에서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대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규모보다 기존 지원체계가 **분산된 서비스의 연결과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무부와 서울시가 2024년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다. 센터에는 검찰·경찰·고용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울시 복지지원팀·디지털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지원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한다.[19] 서울시가 밝힌 센터 설치의 주요 배경 역시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전달체계의 불편을 줄이는 데 있었다.이는 본 연구에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피해자가 복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기관이 모든 기능을 새롭게 보유할 필요는 없다. 기존 기능을 유지하며 연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통합지원이 가능하다. 둘째 이미 광역 단위 통합지원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사한 시설을 별도로 신설할 경우 정책추가성이 낮

18)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년 7월 3일). 「2026년 제6차 원스톱 지원 사례회의 결과보고」.
19) 법무부. (2024).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소개 및 제공 서비스 안내』.

다. 따라서 기초지방정부 역할은 통합기관을 다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생활권에서 피해자를 기존 전문지원체계까지 연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학을 피해지원의 접근지점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이미 시도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20] 사업은 2030 세대의 폭력피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 회복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체계는 아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을 이용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청년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대학으로 지원의 접점을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3개 대학의 인권센터를 별도의 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기관에 접근하기 위한 **생활권 내 진입지점으로 활용**하려는 방향과 부합한다. 두 사례를 종합하면 정책방향은 비교적 명확해진다. 이미 구축한 통합지원 전문성을 활용하되 구는 대학생활권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결하여 '전문지원의 중복'보다 '전문지원까지의 연결'을 보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

2. 정책대안의 비교와 지방정부 개입영역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은 크게 **① 별도 청년 범죄피해지원센터 신설, ② 청년 대상 회복비 직접지원, ③ 정보제공·홍보 강화, ④ 기존 기관 간 회복연계체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접근가능성·전달연속성·정책추가성·제도적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하였다.

<표 5-1>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정책대안 비교

대안	접근가능성	전달연속성	정책추가성	실행가능성	종합판단
A. 별도 청년 범죄피해지원센터 신설	높음	높음	낮음	낮음	기존 광역·전문기관과 중복 우려
B. 청년 회복비 직접지원	보통	낮음	불확실	보통	실제 경제적 공백 확인 후 검토
C. 정보·홍보 강화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보조수단으로 활용
D. 기존 기관 간 회복연계체계 구축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우선 도입

※ 평가는 앞선 제도·예산·전달체계 분석에 따른 상대적 판단이며 정량적 효과크기를 의미하지 않음.

별도 센터 신설은 하나의 기관에서 상담과 연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 여성가족부. (2025, 5월 20).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실시…교제폭력 등 피해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 중복과 신규 인력·시설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확인된 병목이 전문서비스 자체의 부재가 아니라 기관 간 연결과 데이터 환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순위가 낮다. **청년 대상 회복비 직접지원**은 의료·심리·주거 등의 경제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동대문구 청년에게 어떠한 비용이 어느 정도 미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먼저 설계할 경우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항목을 선험적으로 결정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폐기하기보다 **시범운영을 통해 기존 제도의 미충족 수요가 확인될 경우 도입할 수 있는 후속대안**으로 남긴다. **정보제공과 홍보**는 낮은 비용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안내를 확인한 이후 다시 복수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한다면 전달연속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단독사업보다 기관 간 연계체계의 일부로 결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관 간 회복연계체계 구축을 우선대안으로 선정**한다. 별도의 전문서비스를 신설하지 않고 3개 대학, 동대문구, 경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서울시 전문기관의 기존 기능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정책추가성과 실행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실제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수요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경제적 보충지원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판단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Ⅵ. 「DDM 청년 회복브리지」 정책모델

1. 단계별 청년 범죄피해 회복연계 모델

본 연구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DDM 청년 회복브리지」를 제안한다. 사업의 기본원칙은 **“새로운 지원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에 도달할 수 있는 연결을 먼저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결(Connect), 조정(Coordinate), 보완(Complement)의 3단계 모델을 설정한다.

<표 6-1>「DDM 청년 회복브리지」 단계별 추진모델

단계	주요내용	핵심 산출물
1단계 Connect	지역 지원자원 맵핑 및 표준 진입경로 구축	통합안내도, QR 안내페이지, 기관별 담당창구, 표준 연계서식
2단계 Coordinate	동의 기반 기관연계 및 사례관리 시범운영	연계 확인체계, 실무협의, 비식별 성과데이터
3단계 Complement	실제 미충족 수요에 한하여 보충기능 추가	기존 사업 연계 강화 또는 조건부 회복비 지원

첫 단계에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지원자원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동대문구 홈페이지와 대학 인권·상담 관련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범죄피해 회복경로 안내’를 마련하고, 피해유형과 필요한 지원에 따라 경찰·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1366·디지털성범죄 등 전문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 기관목록을

제공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이용자가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 “심리치료와 법률지원이 모두 필요하다”와 같이 **자신 상황에서 출발하면 적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 중심 경로로 구성한다. 기존 동대문구 와 대학 홈페이지에 동일한 QR·웹페이지를 연계하여 개발·관리비용을 최소화한다.

다만 정보제공만으로 피해자가 실제 전문서비스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기관별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표준 연계절차**를 시범운영한다. 최초 접점이 대학 인권센터라면 해당 기관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원수요를 확인하여 적정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동의가 있는 경우 연계한다. 반대로 경찰이나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먼저 이용한 청년에게 학업·취업·주거 등 추가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 동대문구 청년정책이나 대학 내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여러 기관이 공동 보유하는 통합DB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범죄피해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당사자 동의를 받아 전달**하고, 정책평가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집계자료만 사용한다. 최초 기관은 연계 이후 전문기관에서 접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안내’가 실제 ‘연결’로 이어졌는지를 측정한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연계가 중단되고 기존 지원으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가 무엇인지 기록**한다. 예컨대 기존 국가·서울시·센터 사업을 모두 연계했음에도 심리치료 본인부담, 긴급 주거이전, 학업·근로 지속과 관련한 비용이 반복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보충지원 도입을 검토한다. 즉 본 사업의 3단계는 처음부터 현금급여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1·2단계를 통해 확인된 실제 결핍을 토대로 지원대상·항목·단가를 설정하는 조건부 확장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원을 가장 필요한 병목에 집중할 수 있다.

2. 추진체계·예산·성과관리 및 확장방안

사업은 새로운 전담센터를 설치하기보다 기존 행정조직과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용하는 협력형 구조로 운영한다. 총괄부서는 현재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로 설정하는 것이 행정적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하다. 다만 청년정책고용과와 가족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죄피해 지원 이후의 청년정책 및 폭력피해 지원을 연계한다. 별도의 법정위원회나 상설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담당자 중심의 실무협의 방식으로 시작한다.

본 사업은 기존 인력·시설과 홈페이지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센터 설치비와 신규 상근인건비를 편성하지 않는다. 1차 연도에는 다음과 같이 약 1,000만 원 내외의 연계 인프라 구축비를 가정할 수 있다.

항목	산출 내용	추정액
공통 회복경로·온라인 안내 구축	기존 홈페이지 기반 안내페이지·QR·콘텐츠 제작	150만 원
3개 대학 공동 홍보	안내물·캠퍼스 홍보 및 접근성 개선	150만 원
담당자 교육·실무협의	기관별 교육, 연계절차 점검, 실무회의	200만 원
데이터 기준·성과평가	비식별 통계양식, 1차년도 성과분석	300만 원
개인정보·법률자문 및 운영비	연계동의서·업무절차 검토 등	200만 원
합계		**약 1,000만 원**

※ 위 예산은 정책규모 비교를 위한 시범 추계이며, 실제 편성 시 예산과목·조달방식 및 기존 사업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가 필요함. 기존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예산 4,500만 원은 신규 소요예산에 포함하지 않음.

대규모 신규조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책의 핵심적인 실행가능성이다.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이미 14개 기관을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개소 후 2025년 10월까지 1만 936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광역 차원 전문지원 기능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만큼, 동대문구의 정책은 체계를 복제하기보다 **지역에서 해당 체계까지 도달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과평가 역시 단순 만족도보다 전달체계의 변화를 측정해야 한다. 1차 연도에는 과도한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하기보다 기초선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 목표값을 설정한다.

<표 6-2>「DDM 청년 회복브리지」 기관별 역할

기관	주요 역할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사업 총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협력, 기관 간 업무협약 및 성과관리
청년정책고용과	청년정책 정보연계, 청년 대상 홍보, 일자리·자립정책 환류
가족정책 관련 부서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 기존 전문지원체계 연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상담·사례관리, 경제적 지원 및 관련 전문기관 연계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학내 최초접점, 피해자 동의 기반 외부 연계 및 학업복귀 지원
동대문경찰서	긴급신고·수사·신변보호 및 피해자지원기관 연계
서울시·중앙 전문기관	복합·전문 피해에 대한 심리·법률·의료·삭제·주거 등 지원

Ⅶ.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문제를 새로운 지원사업의 부재에서 출발하지 않고 기존 지원자원이 피해자의 회복과정에서 어떠한 전달체계를 형성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접근가능성, 전달연속성, 정책추가성, 제도적 실행가능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 동대문구 청년·안전정책,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

원센터, 3개 대학 인권센터 및 서울시·중앙정부의 전문지원체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동대문구에는 청년정책, 범죄예방사업, 범죄피해자 전문지원과 대학 내 피해지원 접점 등 상당한 정책자원이 이미 존재하였다. 따라서 문제를 지원기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이러한 자원이 서로 다른 행정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개자료만으로는 대학 등 최초접점에서 외부 전문기관까지의 공통된 연계경로와 동대문구 청년의 실제 지원성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지방재정 투입과 청년의 서비스 이용·회복성과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세부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과제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별도의 지원센터나 현금급여를 우선 신설하기보다 기존 자원의 **연결-조정-보완을 단계화한 「DDM 청년 회복브리지」**를 제안하였다. 먼저 생활권 내 최초접점과 전문기관의 경로를 단순화하고, 동의 기반 표준 연계와 성과관리를 시범운영하며, 그 과정에서 실제 미충족 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충지원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2.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첫 번째 정책적 함의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서비스의 직접 공급자뿐 아니라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연결하는 조정자**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전문적인 범죄피해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동일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구축하기보다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역기관에서 기존 전문서비스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제한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일 수 있다. 둘째, 대학은 교육기관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장시간 생활하는 지역자원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동대문구처럼 여러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학내 인권센터를 범죄피해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기보다 **전문지원체계로 이어지는 접근지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정책 사이의 새로운 협력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정부가 2030 폭력피해 대응을 위해 대학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 사례도 대학생활권을 활용한 접근성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21)]

다만 본 연구는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동대문구 청년의 범죄유형별 실제 피해규모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청년 수혜실적, 3개 대학에서 지역 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연계빈도와 이용자의 경험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연계·회복상의 일부 병목은 확정된 실태라기보다 공개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검증가설이다. 향후에는 3개 대학 청년 대상 이용경험 조사, 대학·경찰·센터 실무자 인터뷰, 비식별 지원실적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임의의 피해규모나 지원수요로 보완하지 않고, 현재 확인 가능한 제도와 자원에서 시작하여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 여성가족부. (2025, 5월 20).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실시…교제폭력 등 피해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문헌]

[국내 문헌 및 연구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신규 구축과 참여기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때 활용. 2026년도 예산안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내역 통합 사례관리와 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

박형민, 최지선, 안재경, 권준성, & 송효종. (2025). 『전국범죄피해조사 2024』(일반연구 25-B-02).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 추지현. (2025).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25-A-03).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평등가족부. (2026). 『2026년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법무부. (2024).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소개 및 제공 서비스 안내』.

법무부. (2024년 7월 19일). 「모든 지원을 이곳에서 한 번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동대문구 정책 · 예산자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a).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b).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c). 『2026년도 성과계획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정책고용과. (2026). 『디디미가 알려주는 2026 청년정

책』. 데이터디지털마당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년 7월 3일). 「2026년 제6차 원스톱 지원 사례회의 결과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n.d.). 「조직도」.

[대학 및 대학생활권 관련 자료]

경희대학교 인권센터. (2026). 『경희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2026. 1. 6. 개정).

경희 인권센터 경희대학교 인권센터. (n.d.). 「인권센터 업무」.

경희 인권센터 경희대학교 인권센터. (n.d.). 「상담·신고 및 사건 조사·처리 안내」.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n.d.). 「인권센터 주요 업무」.

조유진. (2024년 11월 17일). 「서울대 학생들의 SOS, 심리상담실 앞 기다림 줄이려면」.

『대학신문』. SNUNews 『대학신문』. (2024년 3월 10일). 「상담사 확충해도 제자리인 심리상담 대기기간,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령 및 자치법규]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제21857호 (2026). 법제처

「청년기본법」, 법률 제21065호 (2025). 법제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28호 (2026). 법제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 법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210호 (2017). 법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796호 (2025). 법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2022). 동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136호 (2021).